#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최신동향 보고서 2019년 11월 2주





# EDPB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분석

# < 목 차 >

- 1. 개요 및 배경
- 2. GDPR 제6조 1(b)항의 내용 분석
- 3. 제6조 1(b)항이 적용되는 4가지 상황에 대한 검토
- 4. 시시점

## 1. 개요 및 배경

- ▶ 소셜 미디어부터 전자 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
  -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이란 개인정보가 법적인 근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EU GDPR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포함
  - 온라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 광고 수익을 위해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 및 부당한 온라인 추적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
  - 온라인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최소화의 원칙2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 1 출처: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2 개인정보의 처리는 적절하며 관련성이 있고, 그 처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함



- 이와 관련,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2019년 10월 8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2/2019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under Article 6(1)(b) GDPR in the context of the provision of online services to data subjects)을 채택
- ▶ 채택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서비스가 유료 혹은 무료로 제공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온라인 서비스 계약의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GDPR 제6조 1(b)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 GDPR 제6조 1(b)항의 맥락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
  - 제6조 1(b)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서비스 개선 △사기 예방 △온라인 행동 기반 광고 △개인화된 콘텐츠 제공 등 4가지 경우를 제시
  - 본 보고서에서는 △GDPR 제6조 1(b)항의 내용 분석 △제6조 1(b)항이 적용되는 4가지 상황에 대한 검토 등의 순서로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분석

## 2. GDPR 제6조 1(b)항의 내용 분석

- ▶ GDPR 제6조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GDPR 제6조 1항은 개인정보 처리가 다음 6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범위에서만 적법하다는 점을 명시
  - 첫째, 정보주체가 하나 이상의 특정 목적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한 경우 [제6조 1(a)항]
  - 둘째, 정보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6조 1(b)항]
  - 셋째, 데이터 컨트롤러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6조 1(c)항]
  - 넷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6조 1(d)항]
  - 다섯째, 공익을 위하거나 데이터 컨트롤러의 공식권한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6조 1(e)항]
  - 여섯째, 데이터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목적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sup>3</sup> [제6조 1(f)항]
- 3 단, 보호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우선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개인정보주체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함 (EU GDPR 6(1))



- ▶ EDPB의 가이드라인은 위의 여섯 가지 경우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온라인 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지침을 제시
  - GDPR 제6조 1(b)항은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거나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구
  - EDPB는 온라인 서비스 계약에서 GDPR 제6조 1(b)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4과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보주체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5을 강조
- ▶ GDPR 제6조 1(b)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과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정보주체가 온라인 소매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①해당 상품을 자택으로 배송 받을 경우, 계약 이행을 위해 소매 업체는 정보주체의 신용카드 정보와 배송지의 주소를 처리해야 하므로 제6조 1(b)항을 개인정보처리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적용할 수 있으나 ② 고객이 픽업 지점으로 배송하도록 선택한 경우, 구매 계약 이행에 정보주체의 자택 주소 처리가 불필요하므로 자택 주소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제6조 1(b)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 온라인 소매 업체가 웹 사이트 방문자들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프로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구매 계약의 이행을 위해 프로필 정보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프로필 작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더라도 제6조 1(b)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 온라인 소매 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고객의 교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6조 1(b)항의 적용이 가능
  - 온라인 서비스 계약 완료 후 이용료 청구서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제6조 1(b)항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회계 처리의 목적으로 서비스 해지 고객의 특정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컨트롤러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한 목적이므로 제6조 1(b)항 대신 제6조 1(c)항을 적용6
  - 정보주체는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우편번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6조 1(b)항의 적용이 가능

<sup>4</sup> The starting point is to identify the purpose for the processing, and in the context of a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 may be a variety of purposes for processing.

<sup>5</sup> Those purposes must be clearly specified and communicated to the data subject

<sup>6</sup> 이 경우,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적용 가능



# 3. 제6조 1(b)항이 적용되는 4가지 상황에 대한 검토

- ▶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EDPB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
  - 온라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제6조 1(b)항이 아닌 정보주체의 동의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
  - EDPB는 서비스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이 온라인 서비스 계약 이행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GDPR 제6조 1(b)항이 서비스 개선이나 새로운 기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
- ▶ '사기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EDPB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
  -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고객 모니터링 및 프로파일링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리 활동은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EDPB의 관점
  - 사기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가 엄격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해당 처리 활동이 데이터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제6조 1(f)항(정당한 이익)을 적용하거나 △신용사기 방지 등을 위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 1(c)항(법적 의무)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
- ▶ **'온라인 행동 기반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EDPB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
  - 행동 기반 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온라인 서비스 계약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제6조 1(b)항을 온라인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EDBP의 입장
  - 이와 함께, 표적광고를 위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인 그룹을 식별할 목적으로 온라인 추적이나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것은 해당 사용자와의 계약 이행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6조 1(b)항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
- ▶ '개인화된 콘텐츠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EDPB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
  - EDPB는 일부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사용자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개인화된 콘텐츠 제공이 본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6조 1(b)항을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



• 단, 기존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계약 이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제6조 1(b)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

# 4. 시사점

- ▶ EDPB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GDPR 제6조 1(b)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sup>7</sup>한다는 점에서 주목
  - GDPR 제6조 1(b)항이 GDPR 제1조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의 목적과 제5조의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배경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제한 및 최소화의 원칙에 부합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 GDPR 제6조 1(b)항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제6조 1(a)항)나 법률 준수의무(제6조 1(c))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

#### Reference

- 1. EDPB, Guidelines 2/2019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under Article 6(1)(b) GDPR in the context of the provision of online services to data subjects, 2019.10.8.
- 2. Lexology, When is it 'Necessary' to Process Personal Data to Perform a Contract?, 2019.10.22
- 3. Paolo Balboni, DATA PROTECTION BOARD ADOPTS GUIDELINE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UNDER ARTICLE 6(1)(B) GDPR IN THE CONTEXT OF THE PROVISION OF ONLINE SERVICES TO DATA SUBJECTS, 2019.10.21.
- 4. The National Law Preview, When is it 'Necessary' to Process Personal Data to Perform a Contract?, 2019.10.22.
- 5.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2018

<sup>7</sup> 

https://www.paolobalboni.eu/index.php/2019/10/21/european-data-protection-board-adopts-guidelines-on-the-processing-of-personal-data-under-article-61b-gdpr-in-the-context-of-the-provision-of-online-services-to-data-subjects/





발행 일 2019년 11월 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정책기획팀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301-2) Tel 1544-5118

- ▶ 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해외개인정보보호동향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